

의안번호	2215222
의 퇴 인	위성곤 의원
회 답 일	2026. 5. 6.
추계번호	25B7349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남영호 침몰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남영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남영호 침몰사고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영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제1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13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함.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의무·재량 규정
5	안 제14조(조사의 방법)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남영호 침몰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남영호 침몰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재량규정
6	안 제15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남영호 침몰사건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제1항) 1. 추모기념관의 건립 2.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재량·의무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함(제2항) 국가등은 제16조에 따른 유족회와 협력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영호 침몰사고 위령제를 실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7	안 제16조(유족회의 설립)	피해자는 희생자 추모사업의 추진, 피해자 권익보호 활동 및 남영호 침몰사고 관련 기록·증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족회를 설립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족회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8	안 제18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9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0	안 부칙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조사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남영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3	안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4	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5	안 제14조(조사의 방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6	안 제15조(추모사업 등 시행)	
7	안 제16조(유족회의 설립)	
8	안 제18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9	안 제19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10	안 부칙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2. 상세 사유

- “남영호 침몰사고”는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남영호가 1970년 12월 15일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제정안은 남영호 침몰사고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정안은 남영호 침몰사고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영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의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유족회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남영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조사위원회의 구성·활동기간, 조사의 방법, 추모사업 등 시행, 유족회의 설립, 중요 증언·진술자 등에 대한 지원,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 남영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9조)
 - 조사의 방법(안 제14조)
 - 추모사업 등 시행(안 제15조)
 - 유족회의 설립(안 제16조)
 - 업무의 위임·위탁 등(안 제18조)
 - 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안 제19조)
 -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안 부칙 제2조)
- 그러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남영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추모기념관 건립, 위령제 실시 등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 유족회에 대한 출연·보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추모기념관의 기준, 위령제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na.go.kr